

2024년

	New Notation	적용일자	분류(Category)	적용규정	비고
1	Plant, WTIMR	Plant : 2024년 7월 1일 이후 검사신청된 선박 WTIMR: 2024년 7월 1일 이후 건조 계약되는 선박	Mobile Offshore Unit의 특기사항	이동식 해양구조물 규칙	Plant : 플랜트 공장설비를 탑재한 구조물로서 소정의 가동장소에서 부 상상태로 장기간 또는 반영구적으로 계류하거나 착저하는 이동 식 해양구조물 WTIMR : 갑판승강장치가 설치된 구조물로서 풍력터빈의 설치, 유지 및 보수작업에 종사하는 이동식 해양구조물 (Wind Turbine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air)
2	IWS	2024년 7월 1일 이후 검사신청된 선박	추가특기사항	규칙 1편 2장 604.의 3항 (8)호	수중검사를 보다 원활하게 받기 위한 목적으로 규칙 1편 2장 604.의 3항 (8)호에 적합한 선박 (In-Water Survey) * 적용규정 개정
3	IP	2024년 7월 1일 이후 건조 계약되는 선박	추가특기사항	산업인력 운송선박 코드(IP Code)	I ndustrial P ersonnel
4	URN(NXX) URN(QXX), URN(RXX), URN(SXX), URN(THR)	2024년 7월 1일 이후 검사신청된 선박	추가특기사항	선박의 방사 소음 지침 3장	수중 방사 소음에 대한 추가요건에 적합한 선박 (URN : U nderwater R adiated N oise, N : N ormal mode, Q : Q uiet mode, R : R esearch mode, S: S eismic survey mode, THR : THR uster mode, XX : Integer ship speed (knots) in still water corresponding to the propeller output at each mode) * 선급부호 기호 변경, 신규 선급부호 생성 및 적용지침 개정

	New Notation	적용일자	분류(Category)	적용규정	비고
5	ARN(SM) ARN(S1), ARN(S2), ARN(BM), ARN(B1), ARN(B2)	2024년 7월 1일 이후 검사신청된 선박	추가특기사항	선박의 방사 소음 지침 4장	공기중 방사 소음에 대한 추가 요건에 적합한 선박 (ARN : A irborne R adiated N oise SM : ARN for S ailing is M easured BM : ARN for B erthing is M easured) * 선급부호 기호 변경 및 적용지침 개정(2023 EAN)
6	AFP-C(EV)	24년 7월 1일 이후 검사신청	추가특기사항	규칙 8편 부록 8-9의 402.3	PCC 부기부호를 부여받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트럭 전용 운반선에 대한 추가의 안전 설비
7	Ammonia Ready D(A) Ammonia Ready D Ammonia Ready I	24년 7월 1일 이후 검사신청	[암모니아 연료선박에 대한 지침서] 부록1	암모니아연료의 사용을 위하여 개념설계를 수행한 선박 (Approval in principle) 암모니아연료의 사용을 위하여 기본설계를 수행한 선박 (Design) 암모니아연료의 사용을 위하여 부분적으로 상세설계를 수행하고 설치한 선박	암모니아연료의 사용을 위한 단계별 준비사항이 적용된 선박
8	LPG Ready D(A) LPG Ready LPG Ready I	24년 7월 1일 이후 검사신청	저인화점연료선박 규칙, Annex 6 (2024 ver.)	LPG연료의 사용에 대한 기본설계만 준비하는 선박 LPG연료의 사용에 대한 기본설계에 추가하여 부분적으로 상세설계까지 수행하고 설치를 하는 선박	LPG연료 준비수준에 따라 해당되는 선급부호를 부여
9	Cyber Resilience	24년 7월 1일 이후 건조계약	선박 및 시스템의 사이버복원력 지침	선박 및 시스템의 사이버복원력 지침 2장	IACS UR E26 요건에 따라 선박의 수명주기 동안 사이버복원력을 가진 선박
10	Cyber Resilience(Managed)	24년 7월 1일 이후 건조계약	선박 및 시스템의 사이버복원력 지침	선박 및 시스템의 사이버복원력 지침 4장	Cyber Resilience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면서, 선박의 운항단계에서 사이버위험관리 프로세스 기반의 사이버보안관리시스템을 이행하는 선박

2023년

	New Notation	적용일자	분류(Category)	적용규정	비고
1	LIQBC-1, LIQBC-2	2023년 5월 30일 이 후 검사신청된 선박	Ore Carrier, Ore/Chmical Carrier 및 Oil/Bulk/Ore Carrierr(선종부 호)의 특기사항	지침 7편 부록 7-12	항해 중 액상화 될 수 있는 고체 산적화물(IMSBC code의 A 그룹 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특별히 건조되거나 장치된) 선박 (Liquefaction of Bulk Cargoes)
2	Harbour Construction (Crane, Dredger, Piling 또는 Ground Amelioration)	2023년 2월 1일 이후 검사신청된 선박	Barge(선종 부호) 의 특기사항	「항만건설 작업선의 선박시설 등에 관한 기준」	부선으로, 기중기선, 준설선, 항타기선 또는 지반개량기선으로 구분 및 검사항목은 아님
3	EAN-SM[x], EAN-S1, EAN-S2, EAN-BM[x], EAN-B1, EAN-B2	2023년 7월 1일 이후 검사신청된 선박	추가특기사항	선박의 외부 공기 소음 지침 3장	외부 공기 소음 허용 기준을 만족하는 선박 EAN : External Airborne Noise SM : EAN for Sailing is Measured BM : EAN for Berthing is Measured x : Integer number(x) of total EAN level in dB(A) (31.5 Hz ~ 8,000 Hz)
4	Reduced Freeboard	2023년 1월 1일 이후 검사신청된 선박	추가특기사항	준설선 규칙 부록 1	감소된 건현 지정을 받은 선박 (Dredger의 특기사항으로 분류되어 있던 Reduced Freeboard를 추가특기사항으로 분류하여 준설이 가능한 선박에 부여할 수 있도록 수정)

	New Notation	적용일자	분류(Category)	적용규정	비고
5	HMS (G, W, SD, S, U, LS)	2023년 6월 30일 이후 검사신청된 선박	추가설비부호	규칙 9편 6장	선체감시장치를 설치한 선박 (Hull Monitoring System) (G : Sensor for location tracking (GPS), W : Sensor for monitoring w ind speed and wind heading, SD : Sensor for monitoring ship s peed and d irection, S : System for acquiring s ea state information, U : As a ship with U MA notation, system for monitoring information in the machinery space, such as output/rpm of the propulsion shaft, LS : sensor s for monitoring l ocal hull s train)
6	LFFS (DF-Methanol, SF- Methanol, DF-Ethanol, SF- Ethanol)	2023년 7월 1일 이후 검사신청된 선박	추가특기사항	저인화점연료선박 규칙 적용지침 부록 5	메틸/에틸 알코올을 연료로 사용하는 이중연료기관을 설치한 선박

	New Notation	적용일자	분류(Category)	적용규정	비고
7	Methanol and/or Ethanol Ready D(A)	2023년 7월 1일 이후 검사신청된 선박	추가특기사항	저인화점연료선박 규칙 적용지침 부록 5, 18절	메틸/에틸 알코올을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념설계를 수행 한 선박
8	Methanol and/or Ethanol Ready D	2023년 7월 1일 이후 검사신청된 선박	추가특기사항	저인화점연료선박 규칙 적용지침 부록 5, 18절	메틸/에틸 알코올을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본설계를 수행 한 선박
9	Methanol and/or Ethanol Ready I (SR, FT, TV, FS, BS, ME, AE, ME-C, AE-C)	2023년 7월 1일 이후 검사신청된 선박	추가특기사항	저인화점연료선박 규칙 적용지침 부록 5, 18절	저인화점연료선박 규칙 적용지침 부록 5 18절에 따라 메틸 알 코올 및/또는 에틸 알코올의 사용을 위하여 부분적으로 상세설 계를 수행하고 설치한 선박 (SR : hull Structure Reinforcement for fuel tank FT : Fuel Tank TV : fuel Tank Venting systems FS : Fuel Supply systems BS : fuel Bunkering Systems ME : Methyl alcohol and/or Ethyl alcohol fired Main Engines AE : Methyl alcohol and/or Ethyl alcohol fired Auxiliary Engines, ME-C : Methyl alcohol and/or Ethyl alcohol fired Main Engine - Conversion AE-C : Methyl alcohol and/or Ethyl alcohol fired Auxiliary Engines - Conversion
10	LFFS (DF-Ammonia, SF-Ammonia)	2023년 7월 1일 이후 검사신청된 선박	암모니아 연료선 박에 대한 지침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하는 이중 연료기관을 설치한 선박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 전용기관을 설치한 선박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
11	LFFS(DF-LPG, SF-LPG)	2023년 7월 1일 이후 검사신청된 선박	저인화점연료선 박 규칙 부록6	화물LPG가 아닌 LPG를 연료로 사 용하는 선박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

	New Notation	적용일자	분류(Category)	적용규정	비고
12	MID	2023년 7월 1일 이후 검사신청된 선박	감염병 확산 방지 설계 선박 지침	감염병 확산 방지 설계 선박 지침 1 절 103. 103. 선급부호 이 지침의 요건에 만족하는 선박은 추가특기사항으로서 PID 부호를 부 여할 수 있다. 또한, 제안된 설계 개 념이 이 지침의 일부 요건을 만족 하거나 통상적인 설계 대비 감염병 확산 완화에 실효성이 있다고 우리 선급이 인정하는 경우 추가특기사 항으로서 MID 부호를 부여할 수 있	선내에서의 감염병 발생 시 의심자 및 확진자의 격리, 육상 직 원 및 방문자와 기존 선원 분리를 통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 한 설계 및 검사요건 중 일부 요건을 만족하거나, 통상적인 설 계 대비 감염병 확산 완화에 실효성이 있다고 우리 선급이 인정 하는 경우 해당 부호를 부여할 수 있다.
13	RP 1	2023년 7월 1일 이후 검사신청된 선박	지침 5편 부록 5- 10	복수 추진 및 조타장치를 위한 추 가요건에 적합한 선박	복수의 추진기관은 주추진 기관 및 대체추진 기관으로 구성될 수 있다. 1조의 추진기 및 조타시스템과 복수의 추진기관이 설치된 선박
14	PC 1 PC 2 PC 3 PC 4 PC 5 PC 6 PC 7	2023년 7월 1일 이후 검사신청된 선박	빙해운항선박 지 침 2장		빙해운항선박 지침 2장에서 규정하는 극지등급에 적합한 선박
15	ES-ALS, ES-ALS1	2023년 7월 1일 이후 검사신청된 선박	추가특기사항	선박의 환경보호 설비에 관한 지침 6장	선체 공기유통장치를 설치한 선박 (Energy Saving-Air Lubircation System) ES-ALS : 선체 공기유통장치의 기본요건을 준수하는 선박 ES-ALS1 : 기본요건과 함께 추가요건을 준수하는 선박

	New Notation	적용일자	분류(Category)	적용규정	비고
16	CEmC-OCCS CEmC-OCCS(R) CEmC-OCCS(S)	2023년 7월 1일 이후 검사신청된 선박	추가특기사항	선박의 환경보호 설비에 관한 지침 7장	선상 탄소 포집 및 저장설비 설치를 위한 요건에 적합한 선박 (Control of Emission CO2 - Onboard Carbon Capture System) OCCS : 배기가스 세정장치를 위한 기본요건에 적합한 선박 OCCS (R) : 기본요건에 추가하여 이중화 요건에 적합한 선박 OCCS (S) : 기본요건에 추가하여 형식승인 또는 시험 및 검사 요건에 적합한 선박
17	OCCS Ready D(A) OCCS Ready D OCCS Ready I	2023년 7월 1일 이후 검사신청된 선박	추가특기사항	선박의 환경보호 설비에 관한 지침 8장	주요 선상 탄소 포집 및 저장설비를 선박에 사용하기 위한 준 비를 한 선박 D(A) : 설비 사용을 위하여 개념설계를 수행한 선박 D : 설비 사용을 위하여 기본설계를 수행한 선박 I : 설비 사용을 위하여 기본설계에 추가한 상세설계를 수행한 선박
18	Smart(INFRA)	2023년 7월 1일 이후 검사신청된 선박	Guidance for Smart Systems	스마트 시스템 지침 3장 1절	스마트 시스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인프라를 갖춘 선박
19	Smart(SHM)			스마트 시스템 지침 3장 2절	선체 구조의 건전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춘 선박
20	Smart(MHM)			스마트 시스템 지침 3장 3절	선내 기계 장비 및 시스템의 작동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시 스템을 갖춘 선박
21	Smart(EEM)			스마트 시스템 지침 3장 4절	선내 시스템이나 선박 자체의 효율성을 유지/개선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춘 선박
22	Smart(NAV)	2023년 7월 1일 이후 검사신청된 선박	Guidance for Smart Systems	스마트 시스템 지침 3장 5절	항해를 지원하는 기능을 위한 시스템을 갖춘 선박

2022년

	New Notation	적용일자	분류(Category)	적용규정	비고
1	Methanol and/or Ethanol Ready D(A)	소급적용 3월 16일	추가특기사항	저인화점연료선박 규칙 적용지침 부록 5	메틸 알코올 및/또는 에틸 알코올의 사용을 위하여 개념설계를 수행한 선박 (Approval in principle)
2	Methanol and/or Ethanol Ready D	소급적용 3월 16일	추가특기사항	저인화점연료선박 규칙 적용지침 부록 5	메틸 알코올 및/또는 에틸 알코올의 사용을 위하여 기본설계를 수행한 선박 (Design)
3	Methanol and/or Ethanol Ready I (SR, FT, TV, FS, BS, ME, AE, ME-C, AE-C)	소급적용 3월 16일	추가특기사항	저인화점연료선박 규칙 적용지침 부록 5, 18절	메틸 알코올 및/또는 에틸 알코올의 사용을 위하여 부분적으로 상세설계를 수행하고 설치한 선박 (Partial Installation) SR : hull Structure Reinforcement for fuel tank FT : Fuel Tank TV : fuel Tank Venting systems FS : Fuel Supply systems BS : fuel Bunkering Systems ME : Methyl alcohol and/or Ethyl alcohol fired Main Engines AE : Methyl alcohol and/or Ethyl alcohol fired Auxiliary Engines ME-C : Methyl alcohol and/or Ethyl alcohol fired Main Engine - Conversion AE-C : Methyl alcohol and/or Ethyl alcohol fired Auxiliary Engines - Conversion
4	EEDI-P3, EEDI-ER[x]	22년 1월 1일 이후 검사신청	추가특기사항	선박의 환경보호 설비에 관한 지침 4장	에너지 효율설계지수 (EEDI)에 대한 추가요건에 적합한 선박 (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 – Phase, Extra Reduction, x : Rate in percent)
5	ESA1, ESA2	21년 9월 1일 이후 건조계약	추가특기사항	지침 5편 부록 5-12-1	강화된 축계정렬 요건을 만족하는 선박 (Enhanced Shaft Alignment)

	New Notation	적용일자	분류(Category)	적용규정	비고
6	PMS-CBM (Planned Maintenance System)	22년 1월 1일 이후 검사신청	추가설비부호	규칙 1편 2장 903.의 3항	상태 기반 정비를 적용한 선박 (Condition Based Maintenance system)
7	ES-Wind, ES-Wind1	22년 7월 1일 이후 검사신청	추가설비부호	선박의 환경보호 설비에 관한 지침 5장	풍력을 이용하여 선박의 추진을 돕는 시스템을 설치한 선박 (Energy Saving-Wind power) (* '추진보조풍력시스템 지침서' 폐기함.)